

Parentage Opportunity Program

법정에 가지 않고도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할 수 있으며, 비용도 무료입니다!

프로그램 개요

캘리포니아 친자 확립 프로그램(POP)은 혼인하지 않은 어머니와 생물학적 아버지가 친자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간편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통일친자관계법(Uniform Parentage Act)은 가족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친자관계 확립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POP란 무엇인가요?

POP는 출생 부모와 다른 부모가 무료로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법원 절차를 통해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명되어 제출된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VDOP)는 법원에서 발급한 친자 관계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친자관계란 무엇인가요?

친자관계란 부모와 자녀 간의 법적 관계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혼인 추정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 또는 임신 및 출산 당시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캘리포니아주 가족법 제 7540조 및 제7611(a)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VDOP를 제출하는 방법
2. 캘리포니아 법원 절차를 통하는 방법

기억하십시오...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십시오.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VDOP) 증인 확인은 다음 장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출생 시)

지역 자녀양육비 기관 - 귀하의 지역 기관은 childsupport.ca.gov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 출생 및 사망 등록 담당 기관

법원 (가사법 지원 담당자) - 귀하의 지역 기관은 childsupport.ca.gov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카운티 복지 사무소

공증인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 작성

VDOP는 자녀가 출생한 이후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VDOP는 법적 친자관계가 확립되기 전에 부모 양측이 모두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며, 서명은 적절한 증인 확인을 받고 POP에 정상적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 외부에서 서명된 VDOP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원본 양면 VDOP를 POP에 제출해야 하며, 공증인 인증서를 제외한 어떠한 첨부 서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는 사람

혼인하지 않은 출생 부모와 유일하게 가능한 생물학적 아버지, 또는

혼인 여부와 관계 없이, 정자 및/또는 난자 기증을 통한 보조생식으로 자녀를 갖게 된 두 사람, 단 기증자가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를 작성할 자격이 없는 사람

대리모를 통해 자녀를 둔 부모

임신이 자연적인 방식인지 보조생식에 의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부모

자녀에 대한 친자관계를 확립하는 법원 명령을 받은 부모

해당 자녀에 대한 유효한 VDOP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부모

해당 자녀에게 또 다른 부모가 있는 경우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 우편 발송 주소

서명 및 증인 입회가 완료된 VDOP 원본을 다음 주소로 우편으로 보내십시오:

Parentage Opportunity Program

P.O. Box 419070 – MS 241

Rancho Cordova, CA 95741-9070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를 취소할 권리

각 부모는 자발적 친자관계 선언서(VDOP)를 취소(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VDOP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 VDOP가 마지막으로 서명된 날짜로부터 역일 기준 60일 이내에 DCSS 0915 친자관계 선언 철회를 POP에 제출해야 합니다.

VDOP에 서명할 당시 부모 중 한 명이 18세 미만이었던 경우, 해당 미성년자는 18세가 된 후 또는 법적으로 독립된 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 방문권 또는 양육비에 대한 법원 명령이 내려졌거나 60일의 철회 기간이 지난 경우, 어느 한 쪽 부모라도 이미 제출된 VDOP를 취소하려면 법원의 무효화 절차(Set Aside)를 거쳐야 합니다.

각 부모는 제출된 VDOP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입니다. 이의 제기는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VDOP가 제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더 이상 제기할 수 없습니다.

친자관계 확립의 이점

친자 관계를 확립하면 자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

군 관련 혜택

상속 권리

건강보험

유족 혜택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VDOP에 서명하기 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VDOP가 제출된 이후에는 서명한 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출생 증명서

출생증명서만으로는 법적으로 친자 관계가 확립되지 않습니다.

VDOP를 제출해도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을 변경하려면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 생명기록 사무국에 전화 916. 445.2684 또는 이메일 VRmail@cdph.ca.gov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자관계 확립의 이점

친자 관계를 확립하면 자녀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

군 관련 혜택

상속 권리

건강보험

유족 혜택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원하시는 경우, VDOP에 서명하기 전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VDOP가 제출된 이후에는 서명한 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POP에 대한 자세한 정보

www.CalParentage.org

POP 문의

AskPOP@dcss.ca.gov

916.464.1982

서비스 이용 시간

월요일 - 금요일 | 오전 8시 - 오후 5시

토요일-일요일 | 휴무

지역 아동양육비 지원 기관에 문의

www.childsupport.ca.gov

866.901.3212

TTY 866.399.4096

Gavin Newsom

캘리포니아 주지사

Kim Johnson

캘리포니아 보건복지부 장관

Kristen Erickson-Donadee

캘리포니아 아동양육비서비스국 국장

KO